



그리스도의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흘러내리고 긴 수염을 지닌 모습으로 묘사된다. 이콘화의 정석이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교도의 신인 제우스 또는 유피테르(쥬피터)의 모습에서 유래한 것이거나, 그리스의 철학자 아스클레피오스의 모습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룸베르코 에코 기획, 발렌티노 파체, '시각예술 서문', 『중세』, 시공사 2010, 681쪽 참조.)  
사진의 장소 출처: 예루살렘, 그리스 정교회 총대주교좌 교회

# 교회법 소개

오늘날 가톨릭교회 관계자들조차도 자신들의 교회법을 소홀히 여기며, 현대 사회의 사람들 역시 교회법(*Ius canonicum*)을 그저 교회의 내부 종교 규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서양문화를 말할 수 없듯이, 교회법의 전통을 모르고 서양 법제사를 논할 수 없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때 교회법의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민사소송절차도 그 기원 면에서 로마법을 계수하여 발전시킨 교회의 소송절차법에서 유래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호부터 내년 겨울호까지 ‘교회법’이라는 주제를 놓고 교회법 전체의 역사를 다루고자 합니다.



한동일  
© 바티칸 대법원 로타로마나 변호사

## I. 교회법<sup>1)</sup>

오늘날 가톨릭교회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교회법을 소홀히 여기며, 현대 사회의 사람들 역시 교회법*Diritto canonico*(ius canonicum)을 그저 교회의 내부 종교 규율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를 이해하지 못하고서 서양문화를 말할 수 없듯이, 교회법의 전통을 모르고 서양 법제사를 논할 수 없다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때 교회법의 영향력은 막대했습니다.<sup>2)</sup> 교회, 즉 로마 가톨릭교회는 서구 사회에서 법의 세계에 단순히 도덕적, 종교적으로만 제한된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창적인 법질서를 구축하여 서구사회의 세계정부 노릇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세 시대 서구 사회에서 교회법은 국제법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민사소송절차도 그 기원 면에서 로마법을 계수하여 발전시킨 교회의 소송절차법에서 유래합니다. 이렇듯 교회법은 특정 종교의 내부 규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대 법률생활 전반에 걸쳐 깊은 영향을 준 법의 모체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 속에서 교회법이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사용된 것일까요?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규율-kanónes’과 ‘법률-nómoi’을 구분했는데, 그러한 구분은 다소 시민법적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후의 공의회들은 신앙 규범*Canones fidei*, 도덕 규범*Canones morum*, 규율 규범*Canones disciplinare*을 구분했습니다. 이 가운데 규율규범은 강제적인 의무라기보다 주로 권고적 성격을 띠었지요.<sup>3)</sup> 이를 ‘노모카논’이라 불렀습니다. ‘노모카논’이란 그리스어 ‘노모스 Nomos(법)’와 ‘카논Canon(규율)’의 합성어로 후기 비잔틴 시대에 일반 시민법과 교회법 규범의 수집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법이라는 말은 바로 ‘규칙, 규율, 규범’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카논Xavwv이라는 말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교회법을 ‘캐논 러Canon Law’라고 부르지요. 노모카논은 교회와 관련한 일반 시민법과 교회법으로 구성된 교회법 모음이었습니다. 동방 교회는 초기부터 유지되어온 이러한 전통을 받아들여, 그들의 교회법을 ‘노모카논’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모카논은 18세기까지 효력을

가지고 사용되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노모카논은 다음과 같습니다. 1170년 작성된 안티오키아 총대주교 발사몬Balsamon의 노모카논, 발사몬의 노모카논에 주석을 달아 출판된 포지오Fozio의 노모카논은 1800년 총대주교 네오피투스Neophytus 8세에 의해 출판되어 정교회의 <법전Corpus iuris>이 되었습니다. 시로시리아 안티오키아 교회의 바르헤브레우스Barhebreus, 1226~1286의 노모카논, 곱트 교회를 위해 1250년경에 작성된 아스 사피 이븐 알 아쌀As-Safi Ibn Al-Assal의 노모카논, 시로시리아 안티오키아 교회의 수도 대주교 압디소 바르 브리카 디 니시비 'Abdīšō' bar Brīkā di Nisibi, 1318의 노모카논 등을 들 수 있지요.<sup>4)</sup>

반면 동방 교회와 달리 라틴서방 교회에서 교회법이라는 용어는 대략 8세기부터 사용되었지만, 정식학문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상당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교회법이라는 학문이 독립 학문으로 정착하게 되는 계기는 1140년 「그라시아노 법령집Decreto di Graziano」의 출간 이후입니다. 그라시아노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에서 출생하여, 교회법학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이탈리아의 교회법 학자이지요. 1140년 그는 초세기부터 그때까지 제정된 모든 교회 법규와 법령집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학문적으로 집대성하여 3945개조로 이루어진 방대한 법령집을 편찬했습니다. 그라시아노는 자신의 법령집을 「모순되는 교회법 조문들과의 조화Concordia discordantium canonum」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교회법학을 신학으로부터 독립된 학문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라시아노 법령집>은 교회의 권위자에 의하여 편찬된 공식 법령집이 아니라 사적으로 편찬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대 교회법전의

1) 본 원고는 2018년 글향아리 출판사에서 출간한 「법으로 읽는 유럽사」 156~164쪽을 한국법제연구원 ‘법연’의 동의를 받아 발췌하여 수정, 재인용한 것임을 밝힌다.

2) 최종고, 「서양 법제사」, 459쪽 참조.

3) G. Ghirlanda, *Diritto canonico*, in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op. cit., p. 350.

4) 한나 알안, 한동일 역, 「동방 가톨릭교회」, 성바오로, 2014, 49~50쪽 재인용. Cf. D. Salachas, *Nomocanoni*, in E. G. Farrugia, (ed.), *Dizionario Enciclopedico dell'Oriente Cristiano*, Roma 2000, 534 e D. Ceccarelli Morolli, *Nomocanoni particolari*, ibid., 535 [Cf. Beveridge G., *Synodicon orientale*, II. 1~272; P. G., CXLIV, 959~1400; Mortreuil, *Histoire du droit byzantin*, III, 457~64; Heimbach, Griech.-Röm. Recht, in Ersch Y Gruber, *Encyclop.*, LXXXVI, 467~70, trad. Petit en Vacant Y Mangenot, *Dict. de théol. cathol.*, s.v. *Blastares*].



#### 라테라노 대성당

이 성당은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그리스도교가 제국의 종교로 공인되면서 서방에 최초로 지어진 교회이며, 서방교회를 대표하는 성당이다.

기초가 되었을 뿐 아니라, 현대 국가들의 법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지요. 그것은 그가 교회법전 편찬에 사용한 방법 때문인데요, 그 규칙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의 우선의 원칙 등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이 원칙들이 바로 그라시아노에 의해 나온 것입니다.

동방과 달리 서방 교회에서 교회법학이 이렇게 뒤늦게 독립 학문으로 정착된 이유는 신학의 원천이 곧 교회법의 원천이고 교회법은 신학의 예속학문 정도로 인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시민법 학자들이 교회법을 독립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학문적 풍토가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1160년 시민법 학자들은 교회법을 시민법과 동등하게 시민법에 상응하는 과목으로 인정했습니다.<sup>5)</sup> 그리고 대략 13세기부터는 교회법과 시민법은 동등한 지위에 있었습니다. 나아가 주석학자들은 시민법과 교회법의 구분 자체를 무시했으며, 14세기부터는 시민법 주제학자조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어머니이자 머리인 성 라테란 교회라고 쓰여 있다.

5) P. Stein, op. cit., p. 48.

차 시민법과 교회법을 함께 다루었습니다.<sup>6)</sup> 이는 종교 중심의 사고가 지배한 중세사회의 시대적 특수성과 행정력과 사법권의 공백이 자아낸 사회적 상황이 반영되어 교회법이라는 윤리적, 종교적 신념과 정치적, 법률적 개념을 통합하는 법률 체계를 고안한 점에서 기인합니다.

교회법학은 「그라시아노 법령집」을 시작으로 트리엔트 공의회<sup>1545~1563</sup>에 이르러 비로소 신학의 틀을 벗어나 독립 학문으로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 뒤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1917년 교회법전에 이르러 피링Pirking, 라이펜스 투엘Reiffenstuel, 쉬말츠그루웨버Schmalzgrueber 등과 같은 학자들에 의해 ‘교회법 제도Institutiones canonicae’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17년 교회법전의 공포와 더불어 교회법전에 대한 주석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1983년 마침내 현행 <교회법전>이 공포되었습니다.<sup>7)</sup> 이처럼 교회법의 성립과 정은 신학으로부터 독립하는 기나긴 여정을 거쳐 오늘날에 이릅니다.

## II. 1천년기 준비

4세기 아래 서방 라틴 교회, 즉 로마 가톨릭교회는 로마 제국의 행정조직을 따라 라틴어로 ‘교구’를 의미하는 ‘디오에체시스Dioecesis’라는 용어로 제국 내에 위계적인 교회 행정조직을 구성합니다. 반면 동방 교회는 그리스어로 ‘교구’를 의미하는 ‘에파르키아Eparchia’라는 용어로 위계적인 교회 행정조직을 구성하지요. 이는 동서방 교회가 각기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사용하기에 발생한 현상으로 각자 자신의 언어로 교구를 표현한 것입니다. 이렇게 5세기 동방에서 형성된 네 군데의 총주교좌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안티오키아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 교회들은 로마 가톨릭교회와는 다른 예법과 고유법

sui iuris, 자치권을 가지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이들 교회들을 구분하기 위해 사용된 개념인 ‘수이 유리스sui iuris’란 형용사는 사전적으로 ‘고유법’을 의미하며, 로마법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친권Patria potestà에 지배받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즉 시민으로서 충만한 시민권을 누리도록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형용사를 동방 교회에 적용한 것은 다른 교회에 구조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고유의 규율과 전례, 신학과 문화적 유산으로 자신의 교계 제도 권위에 따라 운영되는 교회들을 교회법적으로 의미(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sup>8)</sup> 아울러 이 교회들은 로마 교황의 수위권首位權을 인정하면서도 독자적인 전례, 관습, 교회법노모카논, 언어그리스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sup>9)</sup>

그런데 이 교회들이 지리적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서 ‘동방 교회’라고 불렸습니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동방정교회는 1054년 동서방교회의 분열 이후에 나온 개념이기에 그것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라틴 전례의 교회는 ‘서방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고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동방 교회를 ‘모교회母敎會’라 부르며 그리스도교 신앙과 전례의 원천을 가진 교회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모교회는 다섯 전례로 구분됩니다. 여기에는 알렉산드리아 전례[콥트 교회]집트 교회, 총대주교좌와 에티오피아 교회], 안티오키아 전례[말란카르, 마로니타총대주교좌, 시리아총대주교좌 교회], 콘스탄티노폴리스와 비잔틴 전례[알바니아, 벨로루시, 불가리아, 그리스, 헝가리, 멜키트총대주교좌, 루마니아, 러시아, 루테니아, 슬로바니아, 우크라이나, 구 유고슬라비아 교회], 아르메니아 전례[아르메니아 교회총대주교좌], 칼데아 전례[칼데아 교회총대주교좌와 시리아-말라바르인도 서남부에 있는 해안 지방 교회]가 있습니다.<sup>10)</sup>

역사적으로 동방 교회와 서방 교회가 구분되는 정치적 이유는 293년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 행해진 로마

6) Ibid., pp. 51~52.

7) Wenz-Vidal; Conte a Coronata; Blat; Naz: Cappello; Vermeersch; Creusen; Regatillo; Michiels; Van Hove: Maroto. 교회법학 연구와 방법론을 위해서는 1931년 5월 24일자 비오 11세의 현장 Deus scientiarum Dominus를 상기하여야 한다. 사도좌 관보 23(1931), 241 ss 참조. 살비도르, 데 파울리스, 길란다 외 저음, 한동일 옮김, <교회법을 응어사전>, 가톨릭출판사 2017, 182-183쪽 참조.

8) 한나 알안 저, 한동일 역, <동방 가톨릭 교회>, 성바오로 2014, 33-34쪽 제언용.

9) P. V. Pinto, *Commento al Codice di diritto canonico*, Città del Vaticano: Libreria Editrice Vaticana, 2001, pp. 1~2.

10) Cf. Luigi Chiappetta, *Prontuario di Diritto Canonico e Concordatario*, Edizioni Dehoniane, Roma, 1994, pp. 247~248.



#### 교회(종교개혁 이전의 교회 구분)

서방 교회 (라틴교회, 로마가톨릭교회)	동방 교회(모교회, 동방가톨릭교회, 정교회)
알렉산드리아 전례	콥트 교회(이집트 교회, 총대교구)와 에티오피아 교회
안티오키아 전례	말란카르, 마로니타(총대교구), 시리아(총대교구) 교회
콘스탄티노플 또는 비잔틴 전례	알바니아, 벨로루시, 불가리아, 그리스, 헝가리, 멜키트(총대교구), 루마니아, 러시아, 루테니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구 유고슬라비아 교회
아르메니아 전례	아르메니아 교회(총대교구)
칼데아 전례	칼데아 교회(총대교구)와 시리아-말란바르(인도 서남부 해안 지방) 교회

제국의 분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방 교회들은 동로마 황제의 지역에 포함되는 곳에 위치한 교회들이었습니다.<sup>11)</sup> 이러한 지리적 구분에 따라 오늘날 동방정교회의 각 종파 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12세기 전까지 교회법은 독자적인 학과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동방 지역에는 통일되지 못한 다양한 교회법 규범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법 규범을 통지하고 적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법 규범을 공식화하고 규범수록집에 수집하는 작업을 할 때도 다양한 신학적 성격의 요소와 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중세는 특히 그러한 문화적, 신학적 요소 가운데 성경에 대한 연구와 ‘해석’<sup>12)</sup>이 매우 활발하게 전개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 수도원에서는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가 주를 이루었고, 대성당과 수도원에서 지도자들이 성경을 설명해주는 ‘수도원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 학교가 훗날 대학으로 발전하는 모태가 됩니다.<sup>13)</sup>

### 1. 가짜 사도들의 법령집 시대

교부들과 그 밖의 교회 저술가들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에 대해 법률적 측면보다는 윤리적 의무에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부들과 교회 저술가들은 교회에서 시행했던 윤리적인 윤리 규정들을 수집한 ‘가짜 사도들의 법령집 Collectiones Pseudo-apostolicae’<sup>14)</sup>을 출간했지요. ‘가짜 사도들의 법령집’은 고대 동방과 특히 유대인의 종교적인 윤리 관점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는 구약의 옛 백성

인 유대인의 전통적 종교율법과 단절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이스라엘의 율법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된 해방과 부활을 통해 십계명과 그 밖의 약간의 윤리원칙만을 의무로 남겨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회 안에 존재하는 고유한 규율규범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와 사도들로부터 전해 받은 전통의 표현으로서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지요.<sup>15)</sup>

아마도 초기 그리스도교가 유대전통의 윤리적 보편주의만을 주장하고 그리스·로마의 철학적 범주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다문화로 표방되는 지중해 지역에서 하나의 밀교로만 남았을지도 모릅니다.<sup>16)</sup>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스토아학파와 키케로 등의 로마의 법사상가의 주장처럼 모든 인간이 동일한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다고 설파했습니다. 다만 스토아학파가 인간의 이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하여 도덕적 평등을 주장했다면, 그리스도교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줄 아는 능력에 근거하여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본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sup>17)</sup>

11) P. V. Pinto, op. cit., pp. 1~2.

12) 그리스어 ‘hermeneuo’에서 유래했는데, 그 의미는 “외국어에서 자국어로 번역하다, 말로 드러내다, 언어로 표현하다”이다.

13) P. 로싸노, G. 라바시, A. 지를란다, 「새로운 성경신학사전 3」, 바오로딸, 2011, 2456~2457쪽 참조.

14) 위 사도모음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도 규정(Constitutiones Apostolorum)’이다.

15) P. Erdö, *Storia del diritto canonico - disciplina*, in *Nuovo dizionario di Diritto Canonico*, op. cit., pp. 1040~1041.

16) Cf. M. L. Stockhouse, *Some Intellectuals and Social Roots of Modern Human Rights Ideas*, in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20, 4, dicembre 1981, p. 303.

17) Cf. M. Flores, *Storia dei diritti umani*, op. cit., p. 24.



레바논 시돈, 안티오키아 전례의 마로니타 교회, 안키오키아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게 되었고, 그 종교를 그리스도교라 부르게 되었다(사도행전 11, 26).

나아가 그리스도교는 기존의 종교와 전통문화와는 다른 형태의 평등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신의 자녀로서 그리고 '신의 모상<sup>imago Dei</sup>'으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고대 유대법인 귀족과 평민을 차별하지 않는 것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권리를 동일하게 본다는 것을 규정한 유대교 전통을 그리스도교가 계승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사도의 "유다인도 그리스인도 없고,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도 여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라는 말에서도 잘 드러납니다(갈라 3, 28).

이러한 가짜 사도들의 법령집은 대략 사도들이 사망한 후 등장했는데, 진작과 함께 위작도 많이 존재했습니다. 위작들은 주로 팔레스티나와 시리아 지방에서 작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작성 시기는 대략 2세기부터 3세기경으로

추정되나, 일부 법령집은 니케아 공의회 이후에 작성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령집은 정식 가톨릭교회의 법전으로 인정되지 않고, 당대의 교회생활을 참고하는 역사적 사료로 주로 사용될 뿐입니다.<sup>18)</sup>



오늘날 이스탄불, 과거 동로마 시대 동방 교회를 대표하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성 소피아 대성당

18) 이경상, 「가톨릭교회법 입문」, 가톨릭대학교 출판부, 2010, 98쪽 참조.